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3. 7.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발의일자 : 2016년 2월 16일
- 나. 발 의 자 : 이용주 의원 외 3명
- 다. 회부일자 : 2016년 2월 18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6. 3. 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용주 의원)

가. 제안이유

- 흡연은 중독 가능성이 높고, 폐암,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여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비흡연자에게 까지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임산부, 청소년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출입구와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안양천, 도림천의 보행자길에서 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들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

나. 주요골자

- 영등포구 관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안 제5조제1항제6호)
- 영등포구 관내 하천(안양천,도림천) 연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안 제5조제1항제7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영등포구 관내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와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으로,
- 현행 조례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도시공원 35개소를 비롯한 1,047개소¹⁾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됨.
-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살펴보면, 영등포구에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2014.4.11.부터 관내 지하철역 출입구 전체 92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운영 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서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조례에서 특정 장소(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금연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위법령의 위법취지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이미 시행중인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1)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 (영등포구 보건지원과 자료, 2016.2월말 기준)

계(개소)	공원	버스 정류장	마을 마당	학교절대 정화구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건물경계선 10m내	택시 승차대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거리
1,047	35	504	31	43	300	38	92	4

안은, 안양천 및 도림천 보행자 길이 도시공원 기능을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 아니라 「하천법」 적용을 받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 바, 하천변 보행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쾌적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이들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행권 개선에 기여할 것임.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발의년월일: 2016년 2월 12일

발 의 자: 이용주 의원 외 3명

의안 번호	120
----------	-----

1. 제안이유

- 흡연은 중독 가능성이 높고, 폐암,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여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비흡연자에게 까지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임산부, 청소년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출입구와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안양천, 도림천의 보행자 길에서 구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들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영등포구 관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안 제5조제1항제6호)
- 영등포구 관내 하천(안양천,도림천) 연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안 제5조제1항제7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6.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7. 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

제8조제1항 단서 중 제5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6. <u>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u></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구 관할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 부터 10m 이내</u></p> <p>7. <u>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u></p> <p>8. <u>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u></p>
<p>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와 제5조제1항 제2호부터 <u>제5호까지</u>의 장소에 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p>	<p>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 ----- -----<u>제7호까지</u>의----- -----</p>